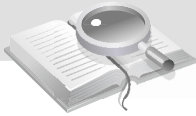


| 정책발표 |

kfri

한·EU FTA 협상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



어 명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연구센터

I. 서론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신호탄으로 싱가포르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지역무역협정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된 미국과의 FTA 협상을 금년 4월 타결한데 이어 5월부터는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유럽연합(EU)과의 F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번째 교역 대상국인 EU와의 FTA는 한·미 FTA와는 다른 측면에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U가 농산물 수출보조는 물론 국내 농업보조 문제 등으로 WTO를 비롯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농업보호 수준이 높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EU는 그 자체가 가장 발전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TA)이면서도 칠레, 멕시코, 싱가포르 등과 더불어 RTA를 가장 많이 체결한 중심축(Hub)을 이루고 있다. 농업경쟁력이 높지 않으면서도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EU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 협정이 농업부문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품목의 양허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관계자들이 EU가 미국보다 손쉬운 협상 상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EU는 농산물 생산액이 미국의 약 1.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농업국인 동시에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2004년 이후 동유럽과 지중해 연안의 10개국을 추가로 받아들인데 이어 2006년부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까지 포함한 27개 회원국을 갖는 세계 최대의 지역통합체이다. 많은 회원국들이 넓은 토양과 다양한 기후대를 바탕으로 각종 농산물을 생산, 소비, 수출하고 있어 해외 시장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산물 수출 보조를 지불할 정도로 역내 잉여 농산물 수출 확대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미국 못지않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단일 국가와의 FTA와는 달리 이질적인 지역에서 다양한 농산물의 수입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EU와의 FTA 협상 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EU 농업의 동향과 농업부문의 협상 전략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상 쟁점을 검토하여 향후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II. EU의 농업 및 농산물 교역 동향

EU의 2004년 농림축산업 생산액(GDP)은 2,170억 달러로 전체 GDP 12조 8,660억 달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경지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41%인 1억 6,200만 헥타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의 약 81배 수준에 달한다. 농가호수는 약 630만 호이며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 4억 5,719만 명의 약 2.8%에 해당하는 1,300만 명으로 나타났다. 2005년 농산물 수출액은 약 841억 달러로 세계 전체 수출액 8,518억 달러의 약 10%를 차지하였다.

2004년 주요 농산물 생산량은 밀 1억 3,800만 톤, 보리 6,200만 톤, 옥수수 5,500만 톤, 감자 6,600만 톤, 유지작물과 사탕무우 각각 1,900만 톤 등이다. 육류 생산량은 쇠고기 805만 톤, 돼지고기 2,120만 톤, 가금육 1,100만 톤, 양고기 105만 톤 등 모두 4,230만 톤이며 낙농품은 치즈 818만 톤, 분유 207만 톤, 버터 206만 톤 등 모두 1,231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Intra-EU Trade)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03년 EU의 역내 농산물 수출은 1,664억 유로, 수입은 1,589억 유로로 수출 578억 유로, 수입 608억 유로에 그친 대외 무역(Extra EU Trade)액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U 내부에서의 교역을 대외 교역보다 더 중요시하는 공동농업정책(CAP)의 「공동체 농산물 우선 원칙(Community Preference)」에 따라 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역외 수입품에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수입 및 수출관련 조치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의 주요 수출 품목은 포도주, 돼지고기, 치즈, 우유 및 우유조제품, 동물사료, 밀과 밀가루, 올리브, 가금육, 설탕, 식물성 유지 등이다. EU가 수출보조를 지불하는 품목(곡물,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낙농품, 설탕, 포도주, 신선 및 가공 과실과 채소)

대부분이 주력 수출품목을 구성하고 있어 수출보조가 농산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¹⁾ 2002년~2003년 기간에 전체 수출량 가운데 수출보조금을 받는 물량의 비중은 버터, 탈지분유, 치즈 등 낙농품이 70~100%, 쇠고기 80%, 돼지고기 6%, 가금육 24%, 밀, 잡곡, 쌀 등 곡물류 54~83%, 포도주 18%, 주류 88% 등으로 낙농품과 축산물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EU의 최대 농산물 수출대상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액의 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7.5%로 2위, 스위스가 7.2%로 3위에 올라 있다. 4위는 7.0%인 일본, 그리고 5위는 노르웨이로 3.1% 등이다.

표 1. EU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2002/2003)

구 분	수출량 (천톤)	보조물량 (천톤)	비중	보조금액 (백만 EUR)	(EUR/ 톤)
밀	14,585.2	12,055.3	0.83	141.2	11.7
잡곡	10,735.9	6,259.3	0.58	167.0	26.7
쌀	237.4	127.7	0.54	24.9	195.0
설탕	5,198.4	600.5	0.12	292.5	487.1
버터 및 버터오일*	260.6	292.0	1.12	545.1	1,866.8
탈지분유	223.7	220.2	0.98	163.0	740.2
치즈	452.5	317.0	0.70	267.7	844.5
기타낙농품	1,052.3	833.4	0.79	596.2	715.4
쇠고기	446.1	358.6	0.80	285.1	795.0
돼지고기	972.0	61.0	0.06	14.6	239.3
가금육	1,021.2	247.4	0.24	90.5	365.8
계란	83.7	59.5	0.71	5.1	85.7
와인	11,847.7	2,096.0	0.18	17.9	8.5
신선과일 및 채소	2,128.3	711.0	0.33	15.3	21.5
가공과일 및 채소	346.5	66.9	0.19	3.1	46.3
주류	962.0	850	0.88	90.4	106.4
기타	-	-	-	413.6	-

* 수출량은 제품중량 기준이며 보조물량은 버터로 환산하여 차이가 발생하였다.

자료 : WTO, EU notification of export subsidies, G/AG/N/EEC/52(2005.2). 이명현(2007)에서 재인용

1) EU는 농업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수출보조금을 계속 감축하고 있으나, 여전히 WTO 회원국 전체 수출보조금의 85~90%를 차지하고 있으며, EU 농산물 수출액의 6.6%(1998년~2002년 평균)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U의 농산물 수입이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 수준이다. 주요 수입품은 동물사료, 과일, 포도주, 과일채소 가공품, 잎담배, 쇠고기, 식물성 유지, 설탕, 채소, 양고기 등이다. EU의 농산물 최대 수입대상국은 전체 수입액의 14.5%를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이며 미국이 10.7%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 밖에 아르헨티나 7%, 터키 4.1%, 중국 3.5%, 뉴질랜드 3.4%, 호주 3.2%, 스위스 3.0% 등이다.

III. 우리나라와의 농산물 교역

한국과 EU의 교역은 증가 추세이며, 한국의 흑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2006년 한국의 대EU 수출액은 492억 달러로 2004년에 비해 114억 달러 늘었으며 수입액은 302억 달러로 60억 달러 증가하였다. 따라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도 2년간 54억 달러 확대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과 EU간 농산물 교역 비중은 낮은 편이며 특히 한국의 농산물 수출 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4년 대EU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수출총액의 0.2%인

6,400만 달러인데 비해,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수입총액의 5.0% 수준인 12억 달러를 넘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한·EU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국가 전체	23,424	19,627	21,694	24,887
수출	농림축산물	39	33	35	52	64
	(비율 %)	(0.2)	(0.2)	(0.2)	(0.2)	(0.2)
수입	국가 전체	15,788	14,921	17,107	19,383	24,187
	농림축산물	900	878	1,145	1,037	1,209
	(비율 %)	(5.7)	(5.9)	(6.7)	(5.4)	(5.0)

자료: KITA.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KATI. 농산물 유통공사(<http://www.kati.net>)
농림부. 농림축산물수출입통계시스템(www.maf.go.kr)

주요 수출품목은 담배(1,100만 달러), 라면과 파스타(900만 달러), 위스키(330만 달러), 인삼(290만 달러) 등 주로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선 농산물은 선인장과 채소종자, 배 등 극소수 품목이며 금액도 매우 적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FTA 체결시 국산 농산물 수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한·EU 주요 농산물 수출입 현황('04~'06 평균) (단위 : 천 달러, %)

순위	한국 수출			한국 수입		
	품 목	금액	(비중)	품 목	금액	(비중)
1	담배	11,103	22.3	돼지고기	299,734	22.3
2	라면, 파스타	9,098	18.3	위스키	219,888	16.4
3	위스키	3,300	6.6	낙농유제품	102,611	7.6
4	인삼	2,871	5.8	올리브유 등	101,470	7.6
5	베이커리, 과자	2,741	5.5	포도주, 포도증류주	55,987	4.2
6	기타식물성점질물	2,434	4.9	전분	54,068	4.0
7	젤라틴	2,144	4.3	초코렛, 코코아 제품	51,696	3.8
8	커피조제품	1,264	2.5	담배	35,204	2.6
9	선인장	1,005	2.0	닭고기	29,992	2.2
10	초코렛	802	1.6	사료	28,198	2.1
11	채소종자	769	1.5	효모	21,015	1.6
12	고추장	755	1.5	모피, 원피	20,823	1.5
13	채소주스	606	1.2	로얄제리 가공품	19,340	1.4
14	곡류조제품	555	1.1	액즙(식류즙)	18,091	1.3
15	김치	512	1.0	베이커리, 과자	16,780	1.2
16	배	484	1.0	파스타, 스파게티	14,332	1.1
17	로얄제리	419	0.8	음료베이스	13,637	1.0

주요 수입품목은 돼지고기(3억 달러), 위스키(2.2억 달러), 낙농품(1억 달러), 올리브유(1억 달러), 포도주(5,600만 달러), 전분(5,400만 달러) 등이다. 대부분 신선 농산물 또는 일차 가공 농산물로서 EU의 수출보조를 받는 낙농품과 포도주, 주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돼지고기처럼 수출보조금 비중이 적은 품목이 최대 수출품에 속해 있어 향후 FTA 체결시 EU의 수출보조와 관계없이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IV. EU의 FTA 체결 사례

EU는 지역통합의 대표적 사례로서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RTA)을 가장 많이 체결한 국가의 하나이다. 그러나 다자간 협정을 선호하여 WTO 체제를 주도하고 있다. EU는 FTA를 추진할 때 상대국이 유럽 국가인지 또는 역외 국가인지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과는 교역 확대 수준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공동체 입장에서 접근하는 반면 역외국에 대해서는 특수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EU는 개도국과 FTA 체결 협상시 비대칭성(Asymmetry)에 입각하여 신축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100% 철폐하지만 농산물은 양허 제외를 포함하여 품목별로 양허 방식과 기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EU는 회원국 정부들과 산업계 및 농업 조합들 간 정기적 협의를 거쳐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세계가격(world price)과 역내가격(EU price)간 가격차와 상대국과의 교역구조, 그리고 EU 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수출국과의 경쟁 등이다. 예컨대, 모로코와는 올리브유, 과일, 채소가 민감 품목이었지만,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는 쇠고기가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었다.

EU의 FTA 협정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기본농산물(Basic Products)과 가공농산물(Processed Products)을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적인 이행계획서를 작성한다는 점이다. 식품안보 등 중요성이 큰 기본농산물을 보호하면서도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EU는 FTA체결시 양허율을 높이기 위해 WTO에 이미 무관세로 양허한 품목들을 ‘관세 즉시 철폐’ 대상으로 분류하

표 4. EU의 멕시코산 농산물 양허 방식

범주(category)	이행 기간	이행 방식	비고
1	발효 즉시	완전 철폐	
2	3년	4회 균등 철폐	매회 25%씩 인하
3	8년	9회 균등 철폐	매회 11%씩 인하
4	10년	3년 유예, 8회 균등 철폐	매회 12~13%씩 인하
4a	9년	10회 균등 철폐	매회 10%씩 인하
5	3년간 유예	재검토 후 철폐 결정	제10(1)조
6	발효 즉시 TRQ	재검토 후 TRQ 물량 조절	제10(2)조, 수출입허가
7	-	가공농산물 관세만 대상	기본농산물 관세 인하 또는 쌍방 양허시
EP	즉시부터 10년	증가세만 철폐	수입가격제도 대상품목
O	-	관세 철폐 예외	보호대상 품목 지정

자료: EU(2000a).

여 이행계획서에 제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는 이미 무관세로 수입하는 품목을 제외한 관세부과 대상품목(dutiable)을 기준으로 양허 수준을 비교해야 한다고 우리 측이 주장한 바 있다.

EU와 멕시코 간 FTA 협정은 200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이행기간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 멕시코산 농산물의 80%, EU산 농산물의 42%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EU는 멕시코산 농산물을 7개 범주(Category)로 분류하여 관세 철폐 기간 차등화, 무관세 쿼터 할당(TRQ), 종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양허하였다. 먼저 EU의 관세 철폐 예외 품목은 전체 농산물 1,083개 가운데 32%인 346개나 된다. 이들 품목 가운데 10개는 보호 대상 품목(Category 0)이며 47개는 진입가격(Entry Price)제도 대상 품목으로 관세 철폐가 면제된다. 그 밖에 계란과 꿀, 절화, 아스파라거스, 완두콩, 당밀, 가공 열대과일, 오렌지 주스 등은 TRQ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EU-칠레간 FTA 협정은 2003년 2월 1일 발효되었다. 양국은 최장 10년간 이행을 거쳐 전체 교역 품목의 97.1%를 완전 자유화(공산품 100%, 농산물 80.9%, 수산물 90.8%)할 예정이다. 포도주를 비롯한 주류의 무역원활화, 동물성 생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무역은 별도 규정에 따라 양허하였다. 양국이 모두 포도주 수출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칠레간 FTA 협정문은 서비스 무역과 투자 자유화, 통관 절차와 표준, 정부조달과 지적 재산권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FTA로서 향후 EU가 체결하는 FTA의 전형으로 활용되고 있다. EU는 칠레와의 FTA에서 관세 철폐 이행 기간을 ‘즉시(year 0)’, ‘4년(year 4)’, ‘7년(year 7)’, ‘10년(year 10)’의 4개 부류로 구분하여 양허하였다. 칠레산 농산물 채소, 과일, 포도주 등 34개 품목은 ‘EP’로 표기하여 종가세와 종량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다. 종량제는 진입가격(Entry Price)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FTA 발효시 종가세만 철폐하는 것으로 양허하였다. 마늘 등 ‘SP’로 표시된 품목은 종가세는 철폐하되 종량제는 유지하며, 펄턴질과 땅콩버터 등 ‘R’로 표시된 품목은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를 절반만 인하한다. 산 동물과 일부 당류는 별도 조건과 함께 ‘TQ’로 표시하여 쿼터내 물량만 관세를 철폐하고 5년~10년간 쿼터를 증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밖에 블루바인 치즈와 포도주 등 ‘PN’으로 표시된 품목은 관세 철폐 예외로 분류하였다. 경쟁력이 높은 칠레산 포도주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전에 포도주를 보호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표 5. EU의 칠레산 농산물 양허 방식

범주(category)	이행 기간	이행 방식	비고
Year 0	발효 즉시	완전 철폐	
Year 4	4년	5회 균등 철폐	매회 20%씩 인하
Year 7	7년	8회 균등 철폐	매회 12.5%씩 인하
Year 10	10년	11회 균등 철폐	9% 10회, 10% 1회 인하
EP	-	종가세만 철폐	수입가격별 차등 종량제
SP	-	종가세만 철폐	종량제(고정) 유지
R	-	관세 50% 인하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기준
TQ	-	쿼터 물량만 철폐	section 1의 특수 조건
PN	-	관세 철폐 예외	보호대상 품목 지정

자료: EU(2000b).

V. 한·EU FTA 협상 중간 점검

한·EU 양측은 1차 FTA 협상에서 전체 상품의 관세 철폐 수준을 금액과 품목 수 기준 95% 이상으로 하되, 공산품은 100% 관세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WTO 규정에 합치되는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협상 초반 “매우 성공적인 협상이며, 협상 담당자간에 상당 수준의 신뢰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평가와 함께 연말 이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대두되었다.

전문가들은 EU의 평균 관세율이 4.2%로 미국의 3.7%보다 높아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의 혜택이 한·미 FTA 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국내 총생산(GDP)도 2%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 연구 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협상 결과에 대해 비판 또는 걱정하는 기류보다 낙관적인 분위기가 더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1차 협상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체 품목의 5% 이내에서 EU측이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과 수출이 어려운 품목을 “미정(U)”으로 분류한 양허초안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EU측의 반응 및 관심도와 우리측 민감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처한다는 전략이었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한 절충안으로 관세 일부 감축과 농산물 셰이프가드(SG) 활용 등 보조적인 조치들을 마련하였다. 그에 따라 양허 제외 대상인 쌀 관련 품목 16개 외에 205개가 ‘U’범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2차 및 3차 협상에서 양허 초안과 수정 양허안을 받아 본 EU의 반응은 냉담했다. EU 측은 자국이 최종안에 근접한 양허안(모든 농산물 관세를 3년 이내에 완전 철폐)을 제출한데 비해 우리 측 양허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양허안 재수정을 요구하였다. 2차 협상에서 EU는 우리나라의 단기 철폐(3년 이내) 비율을 제고하고 미분류(U) 유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부분 감축 및 TRQ 유형도

삭제하고 예외 취급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수산물의 경우 다소 예외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비중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조만간 제시할 EU의 관심품목에 대해서는 7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과 돼지고기와 포도주, 위스키, 맥주, 식용유, 체리와 조제 토마토 등은 한·미 FTA 결과에 비해 차이가 크다며 균형을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치 우리 측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완강한 자세로 우리 측 양허 수준 제고를 압박한 것이다. 당초 우리 측 협상 관계자 일부에서 회자되던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는 일거에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농업과 비농업, 산업과 외교통상 등 부처간 내부 갈등의 조짐도 보일 정도로 흔들렸다. 시장 확대에 따른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FTA의 본질을 고려할 때, 결국 국가의 이해가 걸린 부분에서는 대결 구도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협상 타결은 낙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협상 기간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EU의 반응에 대하여 우리 측은 우리나라의 양허초안이 EU의 기존 무관세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부과 대상(dutiable) 품목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EU에 비해 양허 수준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EU 측에 대해 모든 품목의 양허 확대보다는 EU의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Request)을 제시한 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나타난 EU의 FTA 협상 전략을 분석한 결과 EU는 포도주와 위스키, 낙농품, 돼지고기 등 주력 수출품목의 관세 철폐에 예상보다 높은 강도의 양허 확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농산물 관세 철폐에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국의 식량안보와 관련된 기본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관세를 3년 이내에 철폐하는 양허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에

도 이에 상응(comparable)한 수준의 양허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3차 협상에서는 우리 측의 수정 양허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한·미 FTA 수준에 비해 미흡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U측의 이러한 전략은 우리나라의 농업생산 구조상 자국의 민감 품목을 양허해도 수출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치밀한 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협상 상대국별로 민감품목이 변화하는 신축적인 협상 전략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FTA에서는 민감품목을 삭제하였던 것이다.

EU는 또한 비관세 장벽 철폐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생 및 검역(SPS)과 관련한 지역주의(Regionalism) 인정과 동물 복지, 그리고 수출작업장 승인 절차 마련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동물복지는 교역과 무관하며 상호 협력 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협정문에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지역의 범위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FTA 협상 체결 이후 우리 측과 논의하기로 합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우리 측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품목별 원산지 기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EU가 제안한 원산지 기준은 '완전 생산 기준'으로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측과 동일하지만, 가공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세번 변경 기준'을 주장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가공농산물인 점을 고려할 때 가공 농산물 원산지 기준은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 확대를 억제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EU는 역내 누적(cumulation) 원칙이 적용되므로 27개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원료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을 '완전 생산 기준'에 따라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료가 일부라도 포함된 가공품은 이 기준에 의해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EU측은 EU 회원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조(state aid)의 감축 또는 철폐 방식을 우리나라와의 FTA에도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EU의 감축 대상 보조는 주로 서비스업의 운영 보조이다. 우리나라의 관심이 많은 농산물 보조는 WTO 협정에 따르면 FTA 협상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업서비스 관련 운영 보조를 감축 또는 철폐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VI. 향후 한·EU 농업부문 협상 대책

지난 9월 3차 협상에서 FTA 협정의 핵심 분야인 「상품양허안」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10월로 예정된 4차 협상이 한·EU FTA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U와의 FTA 체결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업분야도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만 EU산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양허 제외와 이행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EU와의 FTA 협상 배경과 경과 및 EU 측의 견해와 입장을 검토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과 주요 쟁점별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EU와의 FTA 협상은 우리나라보다 EU 측이 더 다급한 상황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2003년까지 우리나라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상 EU는 미국, 중국과 함께 중장기 추진 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을 뿐이며, 특히 EU 측이 별 관심이 없어 2006년까지 진전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2006년 7월과 9월 양측 예비협의를 통해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며 만 1년도 지나지 않은 2007년 5월 양측이 공식협상 출범을 선언할 정도로 급속하

게 진행되었다. 결국 아시아 지역의 거점이자 유력한 신흥 고급시장인 한국시장을 미국이 선점하는데 대처하기 위해 급히 협상 시작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협상이 줄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협상의 전반적인 주도권을 장악하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강조하면서 EU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EU가 농산물 양허안을 “3년 이내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라는 최종안 수준으로 제시한 것도 협상 초기부터 불리한 입지를 단숨에 만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우리 측이 협상을 중도에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 정도의 양허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분야별로 최종안 수준의 양허안을 미리 작성하는 것은, 물론 EU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쟁점별로 협상 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둘째, EU 측이 한·미 FTA 결과와 균형을 이루는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미국과 EU의 농업 생산 구조가 서로 달라 완전히 동일한 수준으로 양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같은 돼지고기지만 미국산은 주로 냉장 목살과 삼겹살인데 비해, EU산은 냉동 삼겹살이며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도 EU산이 압도적으로 높아 미국에 비해 점진적인 이행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FTA는 어디까지나 양자간 문제이므로 제3의 FTA 협정이 다른 협정을 구속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반론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와의 상호 협조 차원에서 미국에 양허한 수준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입장을 명시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포도주의 경우 칠레와의 FTA 협상에서 5년간의 이행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2008년에 맞추어 한·미 FTA에서 “즉시 철폐”로 양허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EU와의 협상에서도 단기 철폐로 양허함으로써

이들 3국간 경쟁을 유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EU의 양허안에 상응한(comparable)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전체 품목 기준 양허 비율이 아닌 실제로 우리나라와의 FTA로 인해 관세를 철폐하는 ‘관세부과 대상(dutiable) 품목’을 기준으로 양측의 양허율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양허 수정안의 “즉시 철폐”와 “3년 이내 철폐”를 포함하는 조기 철폐 품목 비율은 90%가 넘어 EU의 85.8% 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이 EU에 비해 크게 취약하므로 기본적으로 양허 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농업생산이나 수출 등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취약한 반면 산업 생산구조와 고용구조상 농업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EU보다 높아 국내 농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이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넷째,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가공 농산물 원산지 기준을 ‘완전 생산 기준’이 아닌 ‘세번 변경 기준’으로 채택하거나 또는 최소한 절충안으로서 ‘부가가치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EU간 상호 수입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은 수출국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양자 누적(Bilateral Cumulation)” 원칙도 채택해야 할 것이다. EU에 비해 국토 면적이 현저하게 좁고 경지면적도 80분의 1 수준으로 협소하여 원료 농산물 국내 생산이 극도로 제한된 우리나라의 불리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허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양자 누적 원칙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농산물 관세 양허 수준이 EU보다 낮은 원인의 하나는 EU의 농산물 수출보조 때문이라는 논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WTO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출보조를 지급하는 EU와의 농산물 교역에서 수출보조를 받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표명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농산물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현행 관세 유지' 또는 '관세 부분 감축' 수준의 양허가 불가피하다고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섯째, 위생 및 검역(SPS)의 지역주의 및 동물복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축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나 수용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할 문제로 제안해야 할 것이다. 막대한 추가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동물 복지 문제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기준에 따른 SPS의 지역주의 도입은 특정 지역이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격리가 가능한 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요인들이 충족될 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VII. 참고문헌

1. 어명근, 허주녕. 한·EU FTA 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C2006-9-3. 2006.
2. 이명현, 김한호, 임정빈. 한·EU FTA 농업부문 협상전략 수립. 인천대학교. 2007.
3. WTO. EU Notification of export subsidies. G/AG/N/EEC/52. 2005.
4. EU.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http://europa.eu.int/comm/external_relations/mexico/doc.2000a
5. EU.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http://europa.eu.int/comm/external_relations/chile/doc.2000b
6. 농림부. 농림축산물수출입통계시스템 (www.maf.go.kr)
7. 농산물유통공사(www.kato.net)
8.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